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1024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. 9. 3.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노식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756번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과 김종무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814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“사직2구역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”에서 서울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 해제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,
- 정비사업 완료시에도 해산되지 않은 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, 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공공의 역할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서 역사·문화적 가치 보전을 삭제함(안 제14조제3항제5호)
-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에 등기 절차,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조합

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 일정 등을 추가함(안 제22조)

- 이전고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,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위하여 전문 조합관리인의 선정의 권고 조항을 신설함(안 제24조의2)
-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에 등기 절차, 청산금 등의 징수, 조합해산 준비 업무 등을 추가함(안 제75조)
- 추진위원회 및 조합장이 제출해야할 자료의 범위에 등기 절차, 청산금 등의 징수,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(안 제86조)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제2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,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,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후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일정에 관한 사항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4조의2(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의 권고 등) ① 시장은 이전고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으로, 법 제41조제5항 단서의 사유로 청산 및 해산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위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매년 이전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그 청산 및 해산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제75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,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,

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, 조합 해산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

제86조제3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,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,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에 관한 계획 및 추진 사항

4.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2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조합의 설립인가(변경인가를 포함한다)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(대안)

현행	개정안
<p>제14조(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“정비 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5.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·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p> <p>④ ~ ⑩ (생략)</p> <p>제22조(조합정관에 정할 사항) 영 제38조제17호에서 “그 밖에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	<p>제14조(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삭제></p> <p>④ ~ ⑩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2조(조합정관에 정할 사항) 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,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,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후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또는 대</u></p>

위원회의 소집 일정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제24조의2(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의 권고 등) ① 시장은 이전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으로, 법 제41조제5항 단서의 사유로 청산 및 해산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위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매년 이전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그 청산 및 해산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제75조(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)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“그 밖에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.

- 1. ~ 8. (생략)

<신 설>

제75조(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) ---

-----.

- 1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,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,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, 조합 해산

제86조(자료의 제출)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구청장의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지원자(위탁지원자를 포함한)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〈신설〉

〈신설〉

3. (생략)

준비업무에 관한 지원

제86조(자료의 제출)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,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,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

4.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

5. (현행 제3호와 같음)